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 - 207호

마포로 1-58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건설부고시 제345호 (1979.9.21.)로 최초 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146호 (1980.5.19.)로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33호 (2004.5.1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550호(2021.10.7.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-114호(2022.6.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마포로 1-58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
2022년 11월 10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명 칭 : 마포로 1-58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-1번지 일대
- 면 적 : 3,806.3㎡(대지면적: 3,328.2㎡, 정비기반시설: 478.1㎡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마스튼제95호도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이인동
-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, 20층
(서초동, 교보생명보험(주) 서초사옥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2년 11월 10일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수 (지하/지상)	주용도	비 고
3,328.2	1,971.45	59.23	28,426.36	474.13	지하5 / 지상19	공동주택 (도시형생활주택)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 분	구 모	관리처분 대상자별 내역				
		토지등 소유자	일반분양	임대	보류시설	비 고
공동주택	계	-	195	-	1	(단위: 세대)
	40㎡ 이하	-	-	-	-	
	41㎡ ~ 50㎡	-	195	-	1	
	51 ~ 60㎡	-	-	-	-	
근린생활시설	3,903.88㎡	560.36㎡	3,343.52㎡	-	-	(단위: 건축면적)

다. 신설 또는 용도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·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

종류	명칭	규모(㎡)	설치비용(천원)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도로	소로 1-1	243.9	42,519	사업시행자 설치 후 마포구청 무상귀속
	소로 3-1	32.2		
공원	소공원	202.0	18,786	
계		478.1	61,305	

·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: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